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서-0829-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9-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스와이엠헬스케어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8 서울바이오허브 혁신커뮤니티센터 202호
	대표자	안정훈
확인내용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69-88-00917
	영점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AI 근골격계 질환 재활 운동처방 솔루션
	주요내용	개인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보안성과 맞춤형 근골격계 질환 진단·처방·관리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58조의2
	구역	에스와이엠헬스케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AI 모델 검증 기관, 서울척병원
	기간	2년
	규모	10,000건 합성데이터 생성 및 실증
	조건	(1) 안전성 검증지표 보완 : 안전성 검증지표 추가·수정, 또는 현 안전성 검증지표의 충분성에 대한 근거 필요 (2) 안전성 검증 주체 변경 : 합성데이터 활용기관(서울척병원)이 아닌, 원본데이터 보유기관 또는 합성데이터 생성기관*에서 안전성 검증 수행 * 원본데이터 보유기관(의료재단)과 합성데이터 생성기관(에스와이엠헬스케어) 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예정 (3) 점진적 실증 확대 : 합성데이터를 공급기업(에스와이엠헬스케어)에서 생성한 후 개인정보위 등의 중간점검을 거친 다음, AI 모델 학습하고 활용기관(서울척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 실증 (4) 심의위 개최 : 합성데이터가 안전성 여부 및 익명정보로 평가 받도록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를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평가·검토 절차 수행 ※ 합성데이터의 생성방식 또는 공개범위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심의위 평가 절차는 변동 가능 (5) 안전한 관리 :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진 않았더라도, 기술발전 등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및 유노출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공통조건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9-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길의료재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9-82-00376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1층				
	대표자 이태훈				
확인내용	영형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AI 근골격계 질환 재활 운동처방 솔루션				
	주요내용 개인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보안성과 맞춤형 근골격계 질환 진단·처방·관리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58조의2				
	구역 에스와이엠헬스케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AI 모델 검증 기관, 서울척병원				
	기간 2년				
	규모 10,000건 합성데이터 생성 및 실증				
	조건 (1) 안전성 검증지표 보완 : 안전성 검증지표 추가·수정, 또는 현 안전성 검증지표의 충분성에 대한 근거 필요 (2) 안전성 검증 주체 변경 : 합성데이터 활용기관(서울척병원)이 아닌, 원본데이터 보유기관 또는 합성데이터 생성기관*에서 안전성 검증 수행 * 원본데이터 보유기관(길의료재단)과 합성데이터 생성기관(에스와이엠헬스케어) 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예정 (3) 점진적 실증 확대 : 합성데이터를 공급기업(에스와이엠헬스케어)에서 생성한 후 개인정보위 등의 중간점검을 거친 다음, AI 모델 학습하고 활용기관(서울척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 실증 (4) 심의위 개최 : 합성데이터가 안전성 여부 및 익명정보로 평가 받도록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를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평가·검토 절차 수행 ※ 합성데이터의 생성방식 또는 공개범위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심의위 평가 절차는 변동 가능 (5) 안전한 관리 :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진 않았더라도, 기술발전 등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및 유출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0-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다오솔루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30-87-02424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자연계캠퍼스 산학관308호(안암동5가, 고려대 안암캠퍼스)				
	대표자	IN HOH PETER(인호)				
확인내용	영형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과 AI 시뮬레이션 서비스				
	주요내용	치과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치과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58조의2				
	구역	다오솔루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비씨앤컴퍼니				
	기간	2년				
	규모	2,000건의 원본데이터를 활용해 합성데이터 생성 및 실증				
	조건	(1) 안전성 검증지표 보완 : 안전성 검증지표 추가·수정, 또는 현 안전성 검증지표의 충분성에 대한 근거 필요 (2) 안전성 검증 주체 변경 : 합성데이터 활용기관(연세대 치과대학병원)이 아닌, 합성데이터 생성기관(㈜다오솔루션)*에서 안전성 검증 수행 * 원본데이터 보유기관(연세대 치과대학병원)과 합성데이터 공급기업(㈜다오솔루션) 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예정 (3) 점진적 실증 확대 : 합성데이터를 공급기업(㈜다오솔루션)에서 생성한 후 개인정보위 등의 중간점검을 거친 다음, AI 모델 학습하고 활용기관(연세대 치과대학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 실증 (4) 심의위 개최 : 합성데이터가 안전성 여부 및 익명정보로 평가 받도록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를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평가·검토 절차 수행 ※ 합성데이터의 생성방식 또는 공개범위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심의위 평가 절차는 변동 가능 (5) 안전한 관리 :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진 않았더라도, 기술발전 등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및 유노출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0-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비씨앤컴퍼니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11-88-9706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포레, B109-1			
	대표자	우주엽			
확인내용	영형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과 AI 시뮬레이션 서비스			
	주요내용	치과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치과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58조의2			
	구역	다오솔루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비씨앤컴퍼니			
	기간	2년			
	규모	2,000건의 원본데이터를 활용해 합성데이터 생성 및 실증			
	조건	(1) 안전성 검증지표 보완 : 안전성 검증지표 추가·수정, 또는 현 안전성 검증지표의 충분성에 대한 근거 필요 (2) 안전성 검증 주체 변경 : 합성데이터 활용기관(연세대 치과대학병원)이 아닌, 합성데이터 생성기관(㈜다오솔루션)*에서 안전성 검증 수행 * 원본데이터 보유기관(연세대 치과대학병원)과 합성데이터 공급기업(㈜다오솔루션) 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예정 (3) 점진적 실증 확대 : 합성데이터를 공급기업(㈜다오솔루션)에서 생성한 후 개인 정보위 등의 중간점검을 거친 다음, AI 모델 학습하고 활용기관(연세대 치과 대학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 실증 (4) 심의위 개최 : 합성데이터가 안전성 여부 및 익명정보로 평가 받도록 「합성 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를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평가·검토 절차 수행 ※ 합성데이터의 생성방식 또는 공개범위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심의위 평가 절차는 변동 가능 (5) 안전한 관리 :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진 않았더라도, 기술발전 등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및 유노출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0-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82-00472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대표자	박원서			
확인내용	영형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과 AI 시뮬레이션 서비스			
	주요내용	치과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치과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58조의2			
	구역	다오솔루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비씨앤컴퍼니			
	기간	2년			
	규모	2,000건의 원본데이터를 활용해 합성데이터 생성 및 실증			
	조건	(1) 안전성 검증지표 보완 : 안전성 검증지표 추가·수정, 또는 현 안전성 검증지표의 충분성에 대한 근거 필요 (2) 안전성 검증 주체 변경 : 합성데이터 활용기관(연세대 치과대학병원)이 아닌, 합성데이터 생성기관(㈜다오솔루션)*에서 안전성 검증 수행 * 원본데이터 보유기관(연세대 치과대학병원)과 합성데이터 공급기업(㈜다오솔루션) 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예정 (3) 점진적 실증 확대 : 합성데이터를 공급기업(㈜다오솔루션)에서 생성한 후 개인정보위의 중간점검을 거친 다음, AI 모델 학습하고 활용기관(연세대 치과대학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 실증 (4) 심의위 개최 : 합성데이터가 안전성 여부 및 익명정보로 평가 받도록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를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평가·검토 절차 수행 ※ 합성데이터의 생성방식 또는 공개범위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심의위 평가 절차는 변동 가능 (5) 안전한 관리 :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진 않았더라도, 기술발전 등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및 유노출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적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로보티즈AI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43-87-03504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11, 더블유101동 812호(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대표자 김병수	
확인내용	명칭	자율주행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옥외광고 서비스
	주요내용	자율주행 실외이동로봇 옥외광고를 통해 로봇 운영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안정성, 옥외광고 사업화 서비스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자율주행로봇은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에 미포함되어 광고물 설치 불가 및 ②네온류 광고물을 차량 진행 방향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 하단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충족 필요 등
	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1단계 실증을 진행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대상 2단계 실증 지역 검토 및 선정 후 2단계 실증 추진
	기간	2년
	규모	총 12대 (1년 차 6대, 2년 차 12대, 총 10억 원)
	조건	①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물건에는 표시 금지 ②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차량 진행방향 정면으로 주행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에서 주행하는 경우 적색·황색·녹색 등 교통신호기 색깔 및 동영상 표시 금지(자동차 설정) ③ 광고물의 밝기는 주간 1,000 cd/m², 야간 100 cd/m² 이하 및 야간 주행시에는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전조등, 후미등 등 작동 ⑤ 공공목적 광고 20% 이상 송출, 로봇 운행 지역의 관할 구청과 협의 및 로봇에 “실증특례사업” 명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55-82-00233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단로 36	
	대표자 채규남	
확인내용	명칭	수소저장합금 저장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물류용 수소지게차 및 저압수소충전소 실증
	주요내용	수소저장합금 저장시스템이 적용된 수소 지게차의 운용 실증 (충전 포함) 및 지게차 실증을 위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저장 합금용 저압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연료 충전시설 관련 상세기준에 금속에 수소 원자를 흡착하여 저장하는 방식인 ‘수소저장합금’을 활용한 충전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5]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P217)
	구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철새로 1126
	기간	2년
	규모	수소저장합금용 저압용 수소충전소 2기 수소저장합금 저장시스템 적용 지게차 12대(2톤급), 2대(2.5톤급)
	조건	☐ (안전성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FP217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압가스법 관리체계 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설비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저장합금 적용 지게차 및 저압 충전소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불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FP217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압가스법 관리체계* 준수
 - * 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16조(검사 등),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검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설비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저장합금 적용 지게차 및 저압 충전소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83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흥(회사명) 주식회사 케어더블유엔터내셔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2, 5층 (동교동, 영준빌딩) 대표자 이승희	
명칭	수소저장합금 저장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물류용 수소지게차 및 저압수소충전소 실증	
주요내용	수소저장합금 저장시스템이 적용된 수소 지게차의 운용 실증 (충전 포함) 및 지게차 실증을 위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저장 합금용 저압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연료 충전시설 관련 상세기준에 금속에 수소 원자를 흡착하여 저장하는 방식인 '수소저장합금'을 활용한 충전 기준 부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5]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P217)	
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202	
기간	2년	
규모	수소저장합금용 수소충전소 1기 수소저장합금 저장시스템 적용 지게차 12대(2톤급)	
조건	□ (안전성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FP217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압가스법 관리체계 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설비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저장합금 적용 지게차 및 저압 충전소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장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FP217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압가스법 관리체계* 준수
 - * 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16조(검사 등),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전)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중)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후)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검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설비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저장합금 적용 지게차 및 저압 충전소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834-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4-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모아소프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22, 4,5,6층 대표자 장주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15-81-87398
명칭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연료전지 항공기 개발·실증	
주요내용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성능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최대이륙중량(1,100kg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제조의 허가·설계·생산단계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부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이동형 연료전지(항공기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H376)	
구역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첨단미래로7길 11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도로 21-11	
기간	2년	
규모	수소연료전지 3기, 지상모형시험체 1대, 지상시제기 1대	
조건	□ (안전성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376을 준용하되,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항공기용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공통조건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항공기용 연료전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항공기용 연료전지 제조에 관한 실증을 허용

*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부대조건 중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376을 준용하되,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44조(제품검사), 제51조(보험가입)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항공안전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항공기용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4-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9-81-02992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9번길 6 대표자 손재일	
명칭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연료전지 항공기 개발·실증	
주요내용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성능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최대이륙중량(1,100kg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제조의 허가·설계·생산단계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부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이동형 연료전지(항공기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H376)	
구역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첨단미래로7길 11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21-11	
기간	2년	
규모	수소연료전지 3기, 지상모형시험체 1대, 지상시제기 1대	
확인내용	조건	
	☐ (안전성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376을 준용하되,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공통조건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 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항공기용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비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항공기용 연료전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항공기용 연료전지 제조에 관한 실증을 허용

*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부대조건 중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376을 준용하되,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44조(제품검사), 제51조(보험가입)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항공안전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항공기용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확인서-83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2TTI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11-01-9145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26(신사동, 압구정문화센터 101호)	
	대표자 강환호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확인내용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43-6 1층, 2tti 압구정점	
	기간 2년	
	규모 미용실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 임시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살롱드 비바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44-14-00523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33, 103호	
	대표자	설양수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구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33, 103호(봉명동)	
	기간	2년	
	규모	미용실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쉐어에비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78-16-00041
	주소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118번길65 1층 쉐어에비뉴	
	대표자	우성자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구역	(1차년도)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118번길 65 1층 쉐어에비뉴 (2차년도) 대전시, 세종시	
	기간	2년	
	규모	미용실 2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아르데이지 정자역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99-03-0314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1, 더샵스타파크 쇼핑몰 2층 E존 01B호	
	대표자	이중훈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1, 더샵스타파크 쇼핑몰 2층 E존 01B호	
	기간	2년	
	규모	미용실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3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시스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65-81-0363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 4,5층	
	대표자	노태석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1번길 17, 2층	
	기간	2년	
	규모	미용실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4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이노플레이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50-81-01956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1, 203호(나성동, 포레뷰2차)	
	대표자	이훈표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구역	세종특별자치시	
	기간	2년	
	규모	미용실 4개소 (마드모아젤 1~4호점)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4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프롬마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27-86-03028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7길5 1층(논현동, 논현주차타워)	
	대표자	이언주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구역	서울특별시	
	기간	2년	
	규모	미용실 3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4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4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르노 합정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7-85-03039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14, 지 1층 B113호,114호	
	대표자 홍기호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갠이지 스테이크(혼합성 단미사료), 펫밀크(액상형 사료) 등 제품을 즉석 조리(단순가열, 휘핑)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사료관리법 제8조,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별표3,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14, 지 1층 B113호,114호 ‘오르노 합정점’	
	기간 2년	
	규모 오르노 합정점 1곳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 성분등특이 완료된 완제품의 섭취방법(주의사항 등) 등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 사료로 성분등특이된 완제품을 제조(개봉·가열·휘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성분등록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즉석조리하여 제공하고자 함 - 사료 성분표시는 매장 내에 안내문 등의 형태로 표시사항 원문 그대로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 - 다만, 음식점에서 가열·제공하는 행위는 제조공장과 다른 위해요인(교차오염, 온도관리 실패 등)이 존재하므로 개봉된 사료의 변이 최소화를 위해 위생 관리 철저 필요 ☐ 메뉴 추가·변경되거나 제공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승인 필요 ☐ 실증 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사고·손해배상 내용, 민원 요지 및 이용자 의견 등)을 실증결과 보고서에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하는 공간과 동물 전용인 사료를 취급하는 공간은 식품위생법 안전상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음료 등 식품(사람용)에 사료(동물용)의 혼입 및 교차오염 우려 ☐ 따라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		

- ①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조리대, 기구, 세척 도구 등 구분 사용**
 - ②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원료 분리 보관**
 - ③ 종사자가 사료 취급 후 식품을 취급할 경우 **손 세척 및 장갑 등 교체 사용**
 - ④ 조리 방법에 따라 **사료가 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위생적 조치***
- * 사료 조리대에 칸막이 설치, 뚜껑이 있는 휘핑기 사용 등
- ⑤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기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종특례·임시허가 등 과세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4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코원프라퍼티 키녹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280-12 (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 (본점)	
	대표자	장평순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주요내용	식품점개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팻밀크(액상형 사료) 등 제품을 즉석 조리(단순가열, 휘핑)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사료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별표3,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280-12 1층 레스토랑 ‘키녹’	
	기간	2년	
	규모	키녹 1곳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 성분등특이 완료된 완제품의 섭취방법(주의사항 등) 등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 사료료 성분등특된 완제품을 제조(개봉·휘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성분등록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즉석조리하여 제공하고자 함 - 사료 성분표시는 매장 내에 안내문 등의 형태로 표시사항 원문 그대로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 - 다만, 음식점에서 가열·제공하는 행위는 제조공장과 다른 위해요인(교차오염, 온도관리 실패 등)이 존재하므로 개봉된 사료의 변이 최소화를 위해 위생 관리 철저 필요		
	☐ 메뉴 추가·변경되거나 제공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승인 필요		
	☐ 실증 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사고·손해배상 내용, 민원 요지 및 이용자 의견 등)을 실증결과 보고서에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하는 공간과 동물 전용인 사료를 취급하는 공간은 식품위생과 안전상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음료 등 식품(사람용)에 사료(동물용)의 혼입 및 교차오염 우려 - 따라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		

- ①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조리대, 기구, 세척 도구 등 구분 사용

②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원료 분리 보관

③ 종사자가 사료 취급 후 식품을 취급할 경우 손 세척 및 장갑 등 교체 사용

④ 조리 방법에 따라 사료가 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위생적 조치*
* 사료 조리대에 칸막이 설치, 뚜껑이 있는 휘핑기 사용 등

⑤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기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4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4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르노 목동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42-85-02894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3층 302-B호	
	대표자	홍기호	

명칭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주요내용	식물성단백(일반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강아지 스테이크(혼합성 단백질사료), 펫밀크(액상형 사료) 등 제품을 즉석 조리(단순가열, 휘핑)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사료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별표3,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3층 302-B호 '오르노 목동점'

기간 2년

규모 오르노 목동점 1곳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확인내용

- 성분등록이 완료된 완제품의 섭취방법(주의사항 등) 등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 사료로 성분등록된 완제품을 제조(개봉·가열·휘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성분등록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즉석조리하여 제공하고자 함
 - 사료 성분표시는 매장 내에 안내문 등의 형태로 표시사항 원문 그대로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도 가능
 - 다만, 음식점에서 가열·제공하는 행위는 제조공장과 다른 위해요인(교차오염, 온도관리 실패 등)이 존재하므로 개봉된 사료의 변이 최소화화를 위해 위생 관리 철저 필요

○ 메뉴 추가·변경되거나 제공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승인 필요

○ 실증 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사고·손해배상 내용, 민원 요지 및 이용자 의견 등)을 실증결과 보고서에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하는 공간과 동물 전용인 사료를 취급하는 공간은 식품위생과 안전상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음료 등 식품(사람용)에 사료(동물용)의 혼입 및 교차오염 우려

○ 따라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

- ①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조리대, 기구, 세척 도구 등 구분 사용**
- ②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원료 분리 보관**
- ③ 종사자가 사료 취급 후 식품을 취급할 경우 **손 세척 및 장갑 등 교체 사용**
- ④ 조리 방법에 따라 **사료가 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위생적 조치***
 - * 사료 조리대에 칸막이 설치, 뚜껑이 있는 휘핑기 사용 등
- ⑤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기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법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종특례·임시허가 등 과세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

특례 대상 규제범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범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확인서-84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45호	규제특례 확인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르노 마포본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96-85-0261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20길 26, 1층, 2층	
	대표자	홍기호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감자지 스테이크(혼합성 단미사료), 펫밀크(액상형 사료) 등 제품을 즉석 조리(단순가열, 휘핑)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사료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별표3,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20길 26, 1층, 2층 ‘오르노 마포본점’	
	기간	2년	
	규모	오르노 마포본점 1곳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성분등특이 완료된 완제품의 섭취방법(주의사항 등) 등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 사료로 성분등록된 완제품을 제조(개봉·가열·휘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성분등록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즉석조리하여 제공하고자 함 - 사료 성분표시는 매장 내에 안내문 등의 형태로 표시사항 원문 그대로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 - 다만, 음식점에서 가열·제공하는 행위는 제조공장과 다른 위해요인(교차오염, 온도관리 실패 등)이 존재하므로 개봉된 사료의 변이 최소화화를 위해 위생 관리 철저 필요 ○ 메뉴 추가·변경되거나 제공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승인 필요 ○ 실증 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사고·손해배상 내용, 민원 요지 및 이용자 의견 등)을 실증결과 보고서에 공유		

- ①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조리대, 기구, 세척 도구 등 구분 사용**
- ②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원료 분리 보관**
- ③ 종사자가 사료 취급 후 식품을 취급할 경우 **손 세척 및 장갑 등 교체 사용**
- ④ 조리 방법에 따라 **사료가 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위생적 조치***
 - * 사료 조리대에 칸막이 설치, 뚜껑이 있는 휘핑기 사용 등
- ⑤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기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종특례·임시허가 등 과세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4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피케이컴퍼니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4층 4170호	
	대표자	김현식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주요내용	식품점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강아지 스테이크(혼합성 단미사료), 펫밀크(액상형 사료) 등 제품을 즉석 조리(단순가열, 휘핑)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사료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별표3,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75 스타필드 수원 1층 1250호 ‘달마시안 스타필드 수원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스타필드 하남 1층 G254호 ‘달마시안 스타필드 하남점’	
	기간	2년	
	규모	달마시안 스타필드 수원점, 달마시안 스타필드 하남점 총 2곳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성분등특이 완료된 완제품의 섭취방법(주의사항 등) 등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 사료료 성분등록된 완제품을 제조(개봉·가열·휘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성분등록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즉석조리하여 제공하고자 함 - 사료 성분표시는 매장 내에 안내문 등의 형태로 표시사항 원문 그대로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 - 다만, 음식점에서 가열·제공하는 행위는 제조공장과 다른 위해요인(교차오염, 온도관리 실패 등)이 존재하므로 개봉된 사료의 변이 최소화를 위해 위생 관리 철저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 메뉴 추가·변경되거나 제공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승인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실증 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사고·손해배상 내용, 민원 요지 및 이용자 의견 등)을 실증결과 보고서에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하는 공간과 동물 전용인 사료를 취급하는 공간은 식품위생과 안전상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음료 등 식품(사람용)에 사료(동물용)의 혼입 및 교차오염 우려		
☐ 식품의약품안전처	○ 따라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		

- ①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조리대, 기구, 세척 도구 등 구분 사용

②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원료 분리 보관

③ 종사자가 사료 취급 후 식품을 취급할 경우 손 세척 및 장갑 등 교체 사용

④ 조리 방법에 따라 사료가 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위생적 조치*

⑤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기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 * 사료 조리대에 칸막이 설치, 뚜껑이 있는 휘핑기 사용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4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위드무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56-24-02072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13 1006동 401호	
	대표자 안지우	
확인내용	명칭	배달 오토바이와 소상공인을 잇는 광고 플랫폼
	주요내용	배달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스티커 형태(자석 스티커 등)의 광고물을 부착하여 광고하는 광고 플랫폼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옥외광고물법 」 시행령 제19조 제5항
	구역 (1차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 (2차년도)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
	기간	2년
	규모 (1차년도)	배달 오토바이 10,000대 / (2차년도) 20,000대(1차년도 실증규모 10,000대 포함)
	조건	○ (지역) 서울 강남·송파 → 전국 특·광역시 ○ (규모) (1년차)초기 6개월간 3천대 허용, 수량 초과 시 1만대로 상향, (2년차)1차연도 실증 확인 후 허용 수량 재검토 ※ 광고물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 여부 등 파악 ○ (금지)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한 광고 금지 ○ (주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부착 ○ (표시) 배달통 등에 “실증특례사업”임을 명시 ※ (예시) “본 광고물은 산업융합법 00조에 의한 실증특례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 (협의) 사업 개시 전에 실증지역 자치단체에 사업 개시 통지 ※ 불법광고물이 아님을 사전에 알려 불필요한 행정조치 예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4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케이에스에너텍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72-86-04001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60, 103호	
	대표자 최광영	
확인내용	명칭	열경화성 플라스틱 포함 혼합 재생원료 고온 가스화 기반 수소 생산시스템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기반 재생원료를 고온 가스화 처리하여 생성한 합성가스 내 수소를 추출하는 시스템의 성능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생산설비는 제20 허가과 검사를 받아야 하나 본 실증 적용 가능한 검사기준이 부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제39조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H171)
	구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양지리 181-4
	기간	2년
	규모	고온 가스화 기술 기반 수소 생산시스템 1식
	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 및 독성·가연성·부식성 가스의 취급 환경, 공정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 관리체계 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불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4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4월 2일
이름(회사명)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52-87-01412	
신청인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대로 1000	
대표자	이상균	
명칭	이동식 매니폴드 및 유연호스를 활용한 다수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주요내용	이동형 매니폴드 및 유연호스를 통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LPG 연료추진 선으로 LPG를 충전하는 방식의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을 위한 탱크에 해당하지 않아 선박에 충전 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구역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사업장(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대로 100) 내 안벽	
기간	2년	
규모	LPG 800톤 * LPG 연료추진선 1척, 유연 호스(4개 호스 연결), 호스 연결부, 이동형 매니폴드 2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60대 활용, 펌프 혹은 압축기와 같은 충전보조장비	
확인내용	조건 □ (조건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활용한 LPG 연료추진 선박 충전에 관한 제도화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 실시 □ (조건2) 아래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을 마련 및 준수 ○ (법령 준수) 신청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허가, 기술검토 등) 및 다음 조건을 모두 준수 - (충전조건) 선박에 LPG 충전시 탱크로리의 액체라인 충전호스는 선박의 액충전구에 접속하고, 균압구가 있을 경우 기체라인 충전호스는 선박의 균압구에 접속하여 균압 후 충전할 것 ※ 다만, 균압구 연결 없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신청인의 의견에 대하여 법적·기술적 검토 사항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안전위원회에서 재검토받아 안전성이 검증되면 상기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 - (허가) 매니폴드를 사용하여 LPG를 충전하는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을 것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운영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 등록 및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술기준 준수 - (검사) 매니폴드 주요 구성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을 사용할 것 ○ (안전성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합성가스를 활용한 수소추출설비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 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 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 허용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 및 독성·가연성·부식성 가스의 취급 환경, 공정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 관리체계* 준수
* 수소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43조(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44조(수소용품의 검사)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전)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중)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후)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검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신청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상기 위원회의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 및 승인 필요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조건3) 다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연결하는 연결설비(매니폴드) 활용시 필요한 안전절차 수립 및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허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 LPG 선박 충전 작업 종료 후 연결설비는 실증 사업장 내에서 보관하고, 신청기업이 매니폴드를 보유하여 안전관리 진행
 - 연결설비는 충전사업자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연결되므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완성검사 등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규정 적용 검토
 - 가스설비 이동에 따른 설비 변형 및 손상 가능성 등 검토
 - 매니폴드 이동 및 충전장소에 재설치시 충전절차를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 이력 보관
 - (조건4) LPG/LNG 공용 매니폴드 사용에 대하여 법적·기술적 사항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안전위원회에서 재검토받을 것
 - (법적 검토) 액화석유가스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각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이후 정기검사 등 시설검사의 적용 범위 검토
 - (기술적 검토) LPG/LNG 혼입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각 유체의 물성에 따른 설비의 재료의 선정 등 기술사항 검토
 - (조건5) 사업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더라도 他 실증특례에서 도출된 내용을 준용하여 안전기준 반영(변경 포함) 및 준수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조건1) LPG 탱크로리를 활용한 LPG 연료추진 선박 충전에 관한 제도화 타성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조건2) 아래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 기준안을 마련 및 준수
 - (법령 준수) 신청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허가, 기술검토 등) 및 다음 조건을 모두 준수
 - (균압 후 충전) 선박에 LPG 충전시 탱크로리의 액체라인 충전호스는 선박의 액충전구에 접속하고, 기체라인 충전호스는 선박의 균압구에 접속하여 균압 후 충전할 것
 - (허가) 매니폴드를 사용하여 LPG를 충전하는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을 것
 - (탱크로리) 탱크로리 운영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및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술기준 준수
 - (검사) 매니폴드 주요 구성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을 사용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 방안 도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신청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상기 위원회의 검증내용·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 및 승인 필요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조건3)** 다수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연결설비(매니폴드) 활용시 필요한 안전절차 수립 및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허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 LPG 선박 충전 작업 종료 후 연결설비는 실증 사업장 내에서 보관하고, 신청기업이 매니폴드를 보유하여 안전관리 진행
 - 연결설비는 충전사업자의 탱크로리와 연결되므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완성검사 등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규정 적용 검토
 - 가스설비 이동에 따른 설비 변형 및 손상 가능성 등 검토
 - 매니폴드 이동 및 충전장소에 재설치시 충전절차를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 이력 보관

- **(조건4)** 사업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더라도 他 실증특례에서 도출된 내용을 준용하여 안전기준 반영(변경 포함) 및 준수 필요

□ **LPG/LNG 공용 매니폴드 사용에 대한 의견**

- **(기술적 검토)** LPG/LNG 혼입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 및 각 유체의 물성에 따른 재료의 선정 등 기술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에 반영
- **(법적 검토)** 허가를 받은 이후 액법 및 도법 각각에 따른 정기 검사 등 시설검사 적용 범위 검토
 - ☞ 이상의 사항은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하고 안전위원회에서 재검토

□ **타당성 연구용역의 수행 주체에 대한 의견**

- **(객관성 확보)** 사업당사자(HD현대중공업)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제3자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연구의 객관성 확보 필요

□ **이입 및 충전작업에 대한 의견**

- **(균압 및 회수)** KGS Code*에 따라 탱크로리(벌크로리 포함)로 LPG를 선박에 충전할 경우 액체라인 충전호스는 선박의 액충전구에 접속하고, 탱크로리의 기체라인 충전호스는 선박의 균압구에 접속한 다음 균압 후 충전할 것

☞ 다만, 균압구 없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업당사자의 의견이 있으므로, 기술적·법적 사항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안전위원회에서 재검토

* KGS Code FS231, FU331, FP331 등의 3.2 이입 및 충전기준

제61호		허가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도시공유플랫폼(주)	
	주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60-88-009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2동 5층(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대표자	박진석	
임시허가 내용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유효기간	2026. 4. 3. ~ 2028. 4. 2.	
	주요내용	PASS, 안면인식 등을 통한 성인인증 기능과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유·무인 편의점에 설치·운영	
	조건	<성인인증 기술 고도화 탑재> ○ 신청인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주류자동판매기 또는 주류무인결제시스템은 국세청의 관련 고시 정비 전까지 생체를 활용한 성인인증 기술을 탑재 할 것	
		<운영 방안> ○ (설치장소) 의제판매(소매)업면허를 받은 사업장 실내에 설치 ○ (CCTV 설치) 영상자료 확보 및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판매기록부 제출) 설치소재지, 주류 판매일·수량·상품명·가격 등을 기재한 월별 판매기록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고유번호 관리) 기기별 고유관리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판매시간 제한) 심야시간 등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세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자동으로 판매 중지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세청에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시 운영시간이 제한될 예정이며,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업체는 주류자판기가 설치된 소매점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함 ○ (경고문 부착) 경고문구 부착 또는 표출 의무 <경고문구(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을 완료한 자만 주류 구입이 가능합니다. ○ (구입자에 대한 안내) 주류판매기 또는 주류무인결제시스템을 구입하였거나 구입예정인 의제판매(소매)업자에게 임시허가 조건 안내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제62호		허가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페이즈커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0-86-00829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00번길 10, 제411호, 412호-큐384호(청라동, 청라 큐브스그니처 1차 오피스텔)	
	대표자	손영민	
임시허가 내용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유효기간	2026. 4. 3. ~ 2028. 4. 2.	
	주요내용	PASS, 안면인식 등을 통한 성인인증 기능과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유·무인 편의점에 설치·운영	
	조건	<성인인증 기술 고도화 탑재> ○ 신청인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주류자동판매기 또는 주류무인결제시스템은 국제청의 관련 고시 정비 전까지 생체를 활용한 성인인증 기술을 탑재할 것 <운영 방안> ○ (설치장소) 의제판매(소매)업면허를 받은 사업장 실내에 설치 ○ (CCTV 설치) 영상자료 확보 및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판매기록부 제출) 설치소재지, 주류 판매일·수량·상품명·가격 등을 기재한 월별 판매기록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고유번호 관리) 기기별 고유관리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판매시간 제한) 심야시간 등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자동으로 판매 중지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제청에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시 운영시간이 제한될 예정이며,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업체는 주류자판기가 설치된 소매점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함 ○ (경고문 부착) 경고문구 부착 또는 표출 의무 <경고문구(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을 완료한 자만 주류 구입이 가 능합니다.	
		○ (구입자에 대한 안내) 주류판매기 또는 주류무인결제시스템을 구입하였거나 구입예정인 의제판매(소 매)업체에게 임시허가 조건 안내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제63호		허가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일월정밀(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13-81-47077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길 35-28		
	대표자 김상익		
임시허가 내용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유효기간 2026. 4. 3. ~ 2028. 4. 2.		
	주요내용 PASS, 안면인식 등을 통한 성인인증 기능과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유·무인 편의점에 설치·운영		
	조건 <성인인증 기술 고도화 탑재> - 신청인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주류자동판매기 또는 주류무인결제시스템은 국세청의 관련 고시 정비 전까지 생체를 활용한 성인인증 기술을 탑재할 것 <운영 방안> (설치장소) 의제판매(소매)업면허를 받은 사업장 실내에 설치 (CCTV 설치) 영상자료 확보 및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판매기록부 제출) 설치소재지, 주류 판매일·수량·상품명·가격 등을 기재한 월별 판매기록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고유번호 관리) 기기별 고유관리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판매시간 제한) 심야시간 등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세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자동으로 판매 중지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세청에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시 운영시간이 제한될 예정이며,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업체는 주류자판기가 설치된 소매점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함 (경고문 부착) 경고문구 부착 또는 표출 의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을 완료한 자만 주류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입자에 대한 안내) 주류판매기 또는 주류무인결제시스템을 구입하였거나 구입예정인 의제판매(소매)업자에게 임시허가 조건 안내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권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제64호		허가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신세계아이앤씨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01-81-2054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이스트동 24층(역삼동, 센터필드)		
	대표자 양운지		
임시허가 내용	명칭 주류 자동판매기		
	유효기간 2026. 4. 3. ~ 2028. 4. 2.		
	주요내용 PASS, 안전인식 등을 통한 성인인증 기능과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유·무인 편의점에 설치·운영		
	조건 <성인인증 기술 고도화 탑재> ○ 신청인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주류자동판매기 또는 주류무인결제시스템은 국제청의 관련 고시 정비 전까지 생체를 활용한 성인인증 기술을 탑재 할 것 <운영 방안> ○ (설치장소) 의제판매(소매)업면허를 받은 사업장 실내에 설치 ○ (CCTV 설치) 영상자료 확보 및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판매기록부 제출) 설치소재지, 주류 판매일·수량·상품명·가격 등을 기재한 월별 판매기록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고유번호 관리) 기기별 고유관리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판매시간 제한) 심야시간 등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자동으로 판매 중지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제청에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시 운영시간이 제한될 예정이며,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업체는 주류자판기가 설치된 소매점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함 ○ (경고문 부착) 경고문구 부착 또는 표출 의무 <경고문구(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을 완료한 자만 주류 구입이 가능합니다. ○ (구입자에 대한 안내) 주류판매기 또는 주류무인결제시스템을 구입하였거나 구입예정인 의제판매(소매)업자에게 임시허가 조건 안내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종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임시허가서

제65호	허가연월일		2026년 4월 2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폴무원헬스케어	
	주소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	
	대표자	박광순, 김진홍	
임시허가 내용	명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유효기간	2026. 4. 3. ~ 2028. 4. 2.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 등 소분)과 일반식품(녹즙 등)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조건	1.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GMP), 일반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소(HACCP)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 2. 구체적으로 신청한 5개 제품 및 제조가공업소 외에 실증기간 동안 제조할 나머지 제품 및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완료 후 제조 3.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 준수 *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 및 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보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 4. (작업장 관리) 융복합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구획 하거나, 구분·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 5. (위생관리)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후 세척·소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